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가단135127 판결 [사해행위 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 별지 목록에 나오는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① 피고와 C이 2020. 11. 26.경 맺은 증여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C에게 이 법원(소관 : 등기국) 2020. 11. 27. 접수 제2598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박관근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2007. 10. 1.경 D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합니다)로 상호를 변경한 후, 현재 서울 중구 E 에서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신금융전문회사입니다.

C은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로서 2021. 6. 23.경부터 연체하여 2023. 6. 5. 기준 17,159,477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차전231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사건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자인 C과 2020. 11. 26.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9871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2. C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피보전채권)

가. C은 원고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카드규약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2021. 6. 23.경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C에게 채무의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하였으나, C은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그 금액이 원금 16,470,34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36,457원, 법비용 152,679원 등 총 17,159,477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C은 2021. 6. 23. 경부터 연체하였고 그의 재산 처분행위는 그 전에 발생하였으나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라. C의 위 (나)의 채무금에 대한 연체이자선 프리워크아웃 실효일로 실제 그의 재산처분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기에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3. C의 사해행위

가. 위와 같이 C은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의 모친(母)인 피고에게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처럼 채권의 존재상태에서 채무자가 그 채무변제 이전에 가족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취소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렇듯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나. 이처럼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있습니다.

다. 따라서 C과 피고 B가 맺은 체결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맺은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98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기에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세대주택 목록>

1. 1동 건물의 표시

서울 성북구 F
[도로명 주소] 서울 성북구 G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H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7.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 성북구 F 대 218㎡.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18분의 28.76 -끝-

